

# 노르웨이의 工業所有權制度



李鍾浣  
(辨理士)

## ① 特許制度의 概要

노르웨이의 特許法은 1967年 12月 8日에 改正公布하여 1968년 1월 1일부터 施行하게 됨으로써 1910년부터 實施해오던 舊特許法은 廢止되었다.

이나라 特許制度上에서의 特許要件은 產業上 利用될 수 있는 發明을 한 사람이거나 이것을 承繼한 사람은 다음에 列舉한 것을 除外하고는 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1. 特許出願 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共然히 實시된 발명

2. 特허출원전에 國내에서 文書, 口頭陳述, 其他方法으로 公衆이 알게 된 狀態에 있는 발명

3. 발명의 實시가 善良한 風俗 또는 公共의 秩序에 反하는 것

4. 植物 및 動物의 品種, 또는 栽培, 飼育에 관한 本質的인 生物學的方法

5. 食物 또는 醫藥에 관한 그 製造物 自體의 발명

한편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1965년 4월 13일에 特許, 意匠, 商標에 관한相互保護協定을締結하여 서로 內國民待遇를 하고 있으며 優先權의 認定은 別途로 規定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出願提出日前에 이미 外國에서의 保護出願에 記載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特허출원을 出願인이 主張한 경우에는 외국에 출원한 것과 同時に 提出한 것으로 看做하여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特許權者는 原特許發明의 擴張을 위한 追加特許를 받을 수 있고 원특허와 동시에 消滅되며 원특허와 함께만이 他人에 移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원특허가 特허권자의 抛棄나 無効宣告로

서 소멸되면 추가특허는 원특허의 殘存期間에 獨立하여 잔존하게 된다.

또한 이 나라 特許制度에서 特微지울 수 있는 것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의 협력에 따라 3個國中 한 나라에만 特허출원을 하더라도 세 나라에 동시에 効力を 發生하는 이른바 노르딕 特許出願制度가 있다.

이나라에 있어서의 特許權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17년이며 의장은 15년이다.

## ② 特許制度의 運用과 特徵

### 1. 特許出願 審查 및 審查節次

#### (1) 出願

특허출원은 書面으로 特許廳에 제출하되 願書는 필요한 圖面을 포함한 발명의 明細書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特許請求의 範圍를正確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명세서는 當業者가 그 발명을 實시할 수 있을程度로 明瞭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서에는 發明者の 姓名을 기재하되 발명자 이외의 사람에게서 特허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그 발명에 관한 權利를 證明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2개 이상相互獨立된 발명은 하나의 願書에 출원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國내에 居住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원에 관한一切의 事項에 관하여 출원인을 代理하는代理人을 選任할 수가 있다.

특허출원의 提出時 또는 출원일로부터 6個月以內에 補正할 때 그 출원서류에 명료치 않은 出願對象을 變更하여 하는 特허출원의 補正(要旨變更補正)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特허출원을

보정할 경우 출원인이 그 要旨를 청구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補正時를 특허출원으로 看做한다.

## (2) 審 査

출원인이 출원에 관한 諸規定을 遵守치 않았을 때 또는 특허청이 특허출원의 受理에 관한 기타의 障害事由를 發見했을 때에는 출원인에 그 要旨를 通知하여 一定期間을 指定, 意見書 또는 補正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지정된 期間內에 의견서를 제출치 않거나 또는 指摘된 缺格事由를 補完하는措處를 講究하지 않았을 때에 그 출원은 保留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의 經過後 4개월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적된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所定의 繢行手數料를 納入했을 경우에는 그 출원의 審查를 繼續시키는 特徵이 있다.

그리고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라도 특허출원의 수리에 관한 장해사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拒絕된다. 이 경우는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判斷했을 때에 限한다.

한편 특허출원이 合當하고 特許賦與에 대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수리되고 아울러 公告된다. 특허출원이 수리된 요지의 통지가 있는 후 2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소정의 印刷費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납입치 않으면 그 출원은 보류된다. 그러나 期間 經過後 4개월 이내에 追納할 수는 있다.

## (3) 出願公告 및 異議申請

특허청은 공중에 異議申請의 機會를 주기 위해 인쇄비가 납입된 출원을 公開하고 이를 공고한다.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출원의 공개와 동시에 특허청은 그 발명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출원인 및 발명자를 記載內容으로 하는 印刷物을 發行하도록 되어 있다.

출원이 공개된 날 이후에 그 출원에 관한 모든 書額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데 출원이 보류, 拒絕處分된 경우, 출원인의 別途의 청구가 있을 때는 除外된다.

異議申請期間이 경과한 후 그 출원은 특허할 것

인지의 與否를 決定하기 위해 다시 심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說明한 方式審查의 규정을 適用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이것을 출원인에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節次를 밟고 있다.

## (4) 審判의 請求

출원인이 출원에 대한 最後決定에 不服했을 때 特許廳 第2部에 審判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이의신청이 適法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원에 특허가 賦與될 것을 결정하였을 때 異議申請人은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심판의 청구는 그 결정의 통지가 當事者에 發送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 제2부에 提起하여야 하며 審判請求料도 함께 納入해야만 심판이開始된다.

특허청 제2부가 한 出願拒絕의 결정에 대해서法院에 提訴할 수가 있는데 拒絕通知後 2個月以內에 제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救濟될 수가 없다.

## (5) 特許의 賦與 및 登錄

특허출원을 容認한다는 요지의 결정이 法的效力를 갖게 되었을 때 특허를 부여하며 이때 그 요지를 공고하고 特許證를 交付하게 된다.

그리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출원을 거절하거나 保留處分한다는 요지의 결정이 法的效力를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여된 특허는 특허청이 保管하는 特許原簿에 登錄되고 누구든지 特허원부를 閲覽하거나 出願書類의 複寫, 所屬書類를入手할 權利가 있다.

## 2. 特許權의 實施許諾 및 讓渡 移轉

特許權者가 他人에게 業으로서 그 발명을 實시할 權리를 許諾했을 경우에 實施權者는 特別한 約定이 없는限り 自己의 實시권을 第3者에 讓渡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특허권을 移轉하거나 實施許諾하는 어느 쪽 當事者の 신청에 따라 特허원부에 등록하고 원부에 등록된 實시권이 소멸되었음이 證明되었을 때 그 實시권의 등록은 抹消된다.

특허권자가 特許取得後 3年을 경과했거나 그

특허출원후 4년을 경과하고서도 그 발명이 국내에서 充分한 規模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려는 者가 이에 대하여 強制實施權을 取得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발명의 실시가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그리고 타인의 특허권에 그 실시를 依存하고 있는 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한 公益上 크게 필요가 있을 때 業으로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 하는 자도 그 특허권에 관한 강제실시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강제실시권은 법원이 許與하고 법원은 발명이 실시될 範圍, 代價, 基他 強制實施權 許與의 條件을 定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그 권리의 실시하는 事業 또는 실시가 豫定되어 있는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移轉할 수가 있다.

### 3. 特許侵害責任 및 補償

특허로서 부여된 獨占權을 故意로 侵害하거나 이것을 방조한 자에게 罰金이나 3個月의懲役에 처하고 侵害罪의 제소는 被害者의 告訴에 의하여서만 할 수가 있다.

특허에 관련되는 소송은 오슬로市法院의 專屬管轄權下에 있고 출원에 관계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 특허청제 2부의 特許出願拒絕審議에 관한 소송, 특허권 무효 또는 이전에 관한 소송을 管掌하고 있다.

### ③ 商標制度의 要點

노르웨이의 現商標法은 1910~1953年法을 폐지하고 1961년 3월 公布,同年 10月에 施行하게 되었는데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스웨덴, 덴마크등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諸國은 1951년에서 1961년사이에 각각 舊法을 폐지하고 신법을 시행하고 있다.

商標權의 發生要件, 서비스마아크 및 立體商標의 보호등에 관한 규정이 3개국에서 共通으로 新法에 反映시키고 있어 상표의 보호에 관한 스칸디나비아諸國의 統一的 見解가 充分히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現行商標法의 要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商標使用으로서 國內去來市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는 등록되지 않고서도 상표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둘 이상이 同一商標에 관하여 獨占權을 주장할 때에는 原則적으로 먼저 발생한 權利者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다만 一定要件을 充足했을 때 두 권리는 併存할 수가 있다).

2. 立體商標 및 서비스마아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商標法 第1條 2項, 3項).

3. 상표의 普通名詞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상표의 複製를 제재하는 것을 禁止시키고 있다.

4. 노르웨이 국내에서 開催된 國際博覽會의 出品物에 사용한 상표는 여기에 展示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하면 中間에서 타인의 사용 또는 출원에 불구하고 보호되며 이 보호는 相互主義에 따라 외국에서 개최되는 國際博覽會에서의 상표의 전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5. 심사,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제도를 採用하고 있다.

6. 등록은 출원일 또는 출원이 있었다고 看做되는 날로부터 有効하다.

7. 상표권자가 소정의 料金을 납입하여 신청하면 상표의 全體的 印象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輕微한 變更이 인정되고 있다.

8. 登錄商標가 顯著性을喪失했을 경우, 기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判決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9. 상표권은 營業과 함께 또는 영업과 分離하여 양도할 수가 있고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에 관계되는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영업의 讓受人에 歸屬된다.

10. 登錄商標의 使用 許諾를 인정하고 있다.

11. 노르웨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本國의 登錄證明書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12. 外國登錄商標에 관해서는 本來, 노르웨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호주의에 立脚하여 國王의 명령에 따라 그 등록을 許可할 수가 있다.

12.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登錄日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更新登錄出願을 할 수가 있다.